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난지물재생센터 3차(총인)처리시설 설치사업(장기-1차)]

□ 점검일시 : 2022.05.16 (월)

□ 점검결과

◆ 점검자 : 정진혁, 박상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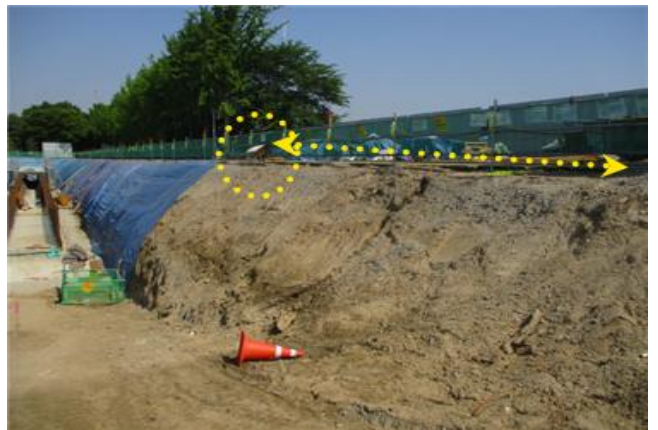
○ 가설통로 안전(방재시설부)

- 본 구조물 공사장에 철근 배근용 시스템비계 조립 작업장은 안전한 가설통로가 상시 확보되도록 자재 관리 요망
- ※ 위험성평가 권고(반영) 사항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,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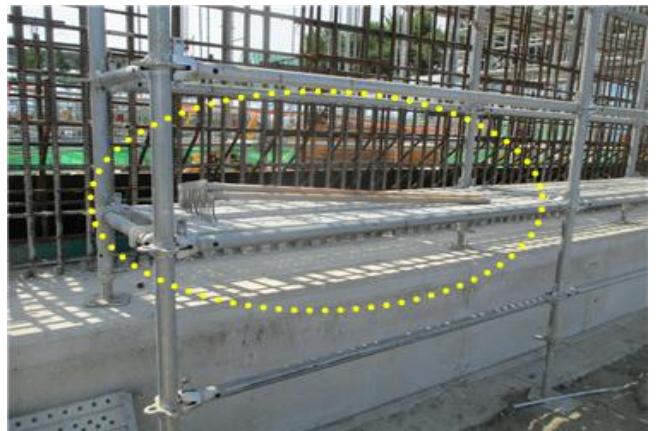
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유입관로 터파기 사면 상단에 위치한 분전반은 안전난간 내 측으로 이동하거나 난간을 넘어 접근할 경우 전도 또는 전락할 우려가 있으니 분전반을 이동설치 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 바람.
- ※ 위험성평가 권고(반영) 사항
-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, 제42조(추락의 방지)

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본 구조물 작업장 작업발판에는 낙하 시 가해물이 되거나 통행 중 걸림이 발생할 수 있는 자재나 공구가 작업 이후에도 남아 있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 요망
- ※ 위험성평가 권고(반영) 사항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



○ 가설통로 안전(방재시설부)

- 본 구조물 작업장은 자재를 카고크레인으로 운반하고 있어 항공마대에 철재를 인양 및 운반하는 경우 항공마대가 터져 낙하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재운반구를 비치하고 활용토록 교육 및 관리 요망
- ※ 위험성평가 권고(반영) 사항
- ※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 3.2.1 중량물취급 안전-005(항공마대)



○ 감전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본 구조물 작업장 작업차량이 통행하는 주 출입구에 이동전선이 바닥에 보호 없이 깔려 있어 피복이 훼손되는 경우 감전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호조치 요망
- ※ 위험성평가 권고(반영) 사항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3조(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), 제315조(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금지)



○ 기타 안전관리(방재시설부)

- 1차 혼화방류조 터파기 작업장 신호수는 신호업무 외 작업으로 인한 충돌, 협착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, 물재생센터 내 이동 차량과 덤프트럭, 굴삭기가 서로 충돌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없도록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관련 근로자 안전교육 바람.
- ※ 위험성평가 권고(반영) 사항
-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(작업지휘자의 지정), 제40조(신호)

